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84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이인선·최은석·고동진

박준태 • 조은희 • 서범수

안상훈 • 유상범 • 정동만

박성훈 · 김성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하면서 선정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선정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외에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위임받은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신청을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이 신청 제한 사유를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자세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상호간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에게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집단등"이라 한다)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2. 상호제한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

-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
성 등) ① (생	략)		성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
			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u>한다.</u>
<u><신 설></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역혁신 선
			도기업의 선정을 신청할 수 없
			<u>다.</u>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
			단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
			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
			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
			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와
			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

② ~ ④ (생 략)

-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 <u>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u>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2. 상호제한출자제한기업집단등 이 해당 기업의 주식(의결권 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 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 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 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 오
-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 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 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u>④</u> ~ <u>⑥</u>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의 취소 등) ① -----
 - -----
 - _____
 - 1. (현행과 같음)

- 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4. (생략)
- ②・③ (생 략)
- 2. <u>제12조제4항</u>에 따른 지역혁 2. <u>제12조제6항</u>-----
 - 3. 4.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